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7.27(수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	담 당 자	전수한 사무관(02-2100-2832) 정태호 사무관(02-2100-2833)	

제 목 :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설명회 개최

- 금융위원회는 '16.8.1일부터 시행되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'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'를 개최함

<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요 >

◇ 일시 및 장소

- ① 지주·은행·저축은행 : 7.27(수) 14:00, 서울 YWCA
- ② 보험·여전 : 7.28(목) 14:00, 화재보험협회
- ③ 금융투자 : 7.29(금) 14:00, 금융투자협회

◇ 주요 참석자

- 금융회사 준법감시, 인사, 기획부문 담당자 등

- 첫째 날인 7월27일(수) 금융지주·은행·저축은행 설명회에서

-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,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음

- 이어 금융위원회는 **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***을 소개하고
현장 참석자들의 **질의에 대해 답변**하는 시간을 가졌음
 - *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, 이사회 구성요건,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, 성과 보수체계,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
 - 아울러,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제기된
금융회사들의 **주요 질의사항**들에 대해 **설명집을 함께 배포**하여 금융
회사들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음
-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**보험·여전·금투업계 설명회**에서도 업권별 특성에
맞게 지배구조법을 설명하고 질의·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,
- 설명회 등을 통해 **추가적으로 제기된 질의 사항** 등에 대해서는
「**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***」 등을 통해 신속하게 **회신**할 계획
 - * 금융위·금감원 지배구조법 담당자 및 각 권역법 담당자들로 구성
 - 또한, 법령해석집 등을 **추후 책자로 제작**하여 금융회사 및 유관
기관 등에 추가 배포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**금융권에 조속히
안정적으로 정착**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

※ < 별첨 >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